



문서번호	전산정보과-5187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91호

주무관	정보화기획팀장	전산정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박유준	소원두	조덕현	소판수	04/24 이비오
협조	법률전문관	원종배		
	법제팀장	이상수		
	정보통신팀장	송점동		
	전산운영팀장	서정실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자치법규 일부 및 전부개정 계획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 일부개정

2015. 4.



성 동 구

(전산정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예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 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 론 홍 보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계 획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일부 및 전부개정 계획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부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상위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I 개정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11.23.) 및 「전자정부법」 (2014. 7.29.)
- 「통계법」 (2014. 5.14.)
- 「개인정보 보호법」 (2014. 8. 7.) 및 「정부조직법」 (2014.11.19.)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II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
-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기준 설정
-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정보화교육이 교육전문 업체와 계약·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부서별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절차 등 세부사항 정비
-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 「통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인 통계작성, 공표, 이용 등의 사항을 재정립
-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통계담당관을 지정하고 임무부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

Ⅲ 주요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 삭제 조문 용어인 “전자심의”와 일상용어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연사항인 제2항을 삭제 (안 제2조)
- 정보화 추진 시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 용어 신설 (안 제2조)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기준 설정 (안 제3조)
-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5조~제9조)
-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담당업무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업무 추가 (안 제11조)
- 정보화사업 협의대상 및 추진절차 등 규칙으로 정함 (안 제12조)
-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방안 신설 (안 제20조의2)
- “구민정보화교육 대상”에 대한 내용 재정립 (안 제24조, 제28조)
- 정보화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 명시 (안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대상 사업 내용 구체화 (안 제3조)
- 조문 제목을 “사전협의 절차 및 예산요구”에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요구”로 변경하고 타당성 검토 절차 방법 명시(안 제5조)
- 조례안 제12조에 정보화책임관을 명시하여 “정보화책임관 및 실무 추진반” 조항 삭제 (안 제6조)
-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 발주 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 제안요청서 협의 및 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협의 제외 업무 구체화
- 정보화사업 계약체결 방법 재정립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안 제9조)
- 자체 정보화교육장 확보로 관내 컴퓨터학원에서 위탁·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9조, 제21조, 제24조)
- 정보화교육 모집시기에 대한 내용 구체화 (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 “통계담당부서”, “통계작성부서”, “통계자료” 용어 정의 (안 제2조)
- 「통계법」 제6조에 따라 통계책임관 등 지정 (안 제3조)
 -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통계담당관은 통계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통계책임관과 통계담당관의 임무 명시 (안 제4조)
-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 명시 (안 제5조)
- 통계의 공표 시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도록 명시 (안 제6조)
- 통계의 공표 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통계 자료 변경과 관리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 통계자료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통계자료 제공 시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공하도록 명시 (안 제8조)
- 통계책임관은 구에서 작성된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 (안 제9조)
-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명시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조항 삭제 (안 제17조)

IV 추진 일정

- 자체심의 의뢰 ----- 2015. 4월

심 의 명	심 의 부 서
부 패 영 향 평 가	감 사 담 당 관
규 제 심 사	기 획 예 산 과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보 육 가 족 과

- 입법예고 ----- 2015. 4월 ~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5. 5월

-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